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8

발의연월일: 2021. 4. 27.

발 의 자:최춘식 · 권영세 · 김성원

김희곤 • 박대수 • 박성민

서병수ㆍ이 영ㆍ정찬민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 허세를 경감하고, 기관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거나 각 기관이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기 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모두 2021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으로 일반 법인에 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효율성이 떨 어지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

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 0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및 제57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경	<u>2024년 12월 31일</u>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	
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
한 감면) ① (생 략)	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	2
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	

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 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 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3. (생략)
- ③ ~ ⑩ (생 략)
-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1년 12</u> <u>월 31일</u>까지 면제한다.
 - 1. ~ 6. (생략)
 - ② ~ ④ (생 략)

	_
<u>202</u>	_
<u>4년 12월 31일</u>	-
<u>202</u>	2
4년 12월 31일	
,	-
	_
	-
	-
	_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③ ~ W (현행과 짙름)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u> </u>
등에 대한 감면) ①	-
<u>2</u> 024년 12	2
월 31일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